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75
----------	-------

발의연월일 : 2018. 5. 21.

발의자 : 함진규 · 이완영 · 강석진
여상규 · 이명수 · 박덕흠
이찬열 · 곽대훈 · 김성원
박완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준수사항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각지의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6조의2(운수종사자의 근로여 건 개선)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의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p>